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관련 1308
--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04월 23일
제 안 자 : 기획경제위원회

1. 수정이유

- 행정안전부의 「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 부합하는 기금 수입과목으로 수정해 용어 사용 혼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기금 조성 재원 항목을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부합하도록 각각 수정함(안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).
- 기금수립기준의 수입과목에 명시된 항목 외에 ‘기금 조성을 위한 그 밖의 수입’을 별도의 호로 구분하여 기금 조성 재원 항목으로 규정함(안 제3조제1항제5호 신설).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안 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의 기금전출금 단,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” 을 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차입금” 을 “예수금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
4.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

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</u>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</p> <p>가. ~ 다. (생 략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으로부터의 차입금</p> <p>3.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p> <p>4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의 기금전출금 단, 일반회계의 기금전출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으로부터의 <u>차입금</u></p> <p>3. <u>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u></p> <p>4. <u>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</u> <u><신 설></u></p>	<p>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</p> <p>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다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으로부터의 <u>예수금</u></p> <p>3. <u>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</u></p> <p>4. <u>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</u></p> <p>5. <u>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</u></p>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” 을 “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.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” 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차입금” 을 “예수금” 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

4. 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

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

제7조제1항 단서 중 “사무중” 을 “사무 중” 으로 하며, “포함)및” 을 “포함) 및” 으로 하고,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」” 을 “「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」” 으로 하며, “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” 을 “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 관리공무원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	제3조(기금의 조성) ① ----- -----.
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의 출연금 단, 일반회계의 출연금</u> 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상당액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산분을 공제한 금액의 50% 이상으로 한다.	1. 일반회계 및 <u>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단,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 ----- ----- -----.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차입금</u> 3. <u>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u> 4. <u>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</u>	2.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으로부터의 <u>예수금</u> 3. <u>정부로부터의 차입금 및 보조금</u> 4. <u>기금의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기타수입</u> 5. <u>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</u>
<u><신 설></u>	
제7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다만, 기금관리공무원의 <u>사무종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</u> 지급명령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「 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</u> 」에서 정하는 관서 <u>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</u> 으로 하여 처리하게하여야 한다.	제7조(회계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<u>사무 종지출의 원인행위(계약사무 포함) 및</u> ----- ----- ----- 「 <u>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</u> 」 ----- <u>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</u> -----. 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